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상해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(안 제4조 및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,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-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,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5조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국방의 의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이 복무 중에 부상 등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병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됨. 다만,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음.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동작구, 마포구, 서대문구가 이미 제정 운영

하고 있으며, 소관부서 비용추계 결과 2025년도 기준 우리구 현역입영 대상은 약 450명으로 1인당 보험료 5만원으로 계산시 2,250만원 예산이 소요됨.
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